

김웅 / 4월 / 기초GS / 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13434	19.5	14	0	0	33.5	1	2.27%	#DIV/0!	44
517201	18.5	14	0	0	32.5	2	4.55%	#DIV/0!	
517369	18	12	0	0	30	3	6.82%	#DIV/0!	
519346	20.5	9.5	0	0	30	3	6.82%	#DIV/0!	
519900	18	12	0	0	30	3	6.82%	#DIV/0!	
515461	17.5	12	0	0	29.5	6	13.64%	#DIV/0!	
516047	16.5	13	0	0	29.5	6	13.64%	#DIV/0!	
515446	19	10	0	0	29	8	18.18%	#DIV/0!	
519584	18	11	0	0	29	8	18.18%	#DIV/0!	
517162	20	8.5	0	0	28.5	10	22.73%	#DIV/0!	
519948	17	11.5	0	0	28.5	10	22.73%	#DIV/0!	
517209	16	12	0	0	28	12	27.27%	#DIV/0!	
517414	15.5	12	0	0	27.5	13	29.55%	#DIV/0!	
514504	17	10	0	0	27	14	31.82%	#DIV/0!	
515355	15	12	0	0	27	14	31.82%	#DIV/0!	
515393	16	11	0	0	27	14	31.82%	#DIV/0!	
515479	18	9	0	0	27	14	31.82%	#DIV/0!	
515429	14.5	12	0	0	26.5	18	40.91%	#DIV/0!	
517388	16.5	10	0	0	26.5	18	40.91%	#DIV/0!	
518062	17	9.5	0	0	26.5	18	40.91%	#DIV/0!	
517282	16	10	0	0	26	21	47.73%	#DIV/0!	
518181	14.5	11	0	0	25.5	22	50.00%	#DIV/0!	
518261	14.5	11	0	0	25.5	22	50.00%	#DIV/0!	
515462	13	12	0	0	25	24	54.55%	#DIV/0!	
517143	15	10	0	0	25	24	54.55%	#DIV/0!	
518109	15.5	9	0	0	24.5	26	59.09%	#DIV/0!	
515470	14	10	0	0	24	27	61.36%	#DIV/0!	
517212	17	7	0	0	24	27	61.36%	#DIV/0!	
518205	17.5	6.5	0	0	24	27	61.36%	#DIV/0!	
515472	14.5	9	0	0	23.5	30	68.18%	#DIV/0!	
515475	14.5	9	0	0	23.5	30	68.18%	#DIV/0!	
517153	14	9.5	0	0	23.5	30	68.18%	#DIV/0!	
517479	13.5	10	0	0	23.5	30	68.18%	#DIV/0!	
518180	17.5	6	0	0	23.5	30	68.18%	#DIV/0!	
520839	21	2.5	0	0	23.5	30	68.18%	#DIV/0!	
515567	18.5	4	0	0	22.5	36	81.82%	#DIV/0!	
517193	13.5	8.5	0	0	22	37	84.09%	#DIV/0!	
515492	16	5	0	0	21	38	86.36%	#DIV/0!	
517160	15	6	0	0	21	38	86.36%	#DIV/0!	
518095	11	10	0	0	21	38	86.36%	#DIV/0!	
515466	16.5	4	0	0	20.5	41	93.18%	#DIV/0!	
520133	11.5	9	0	0	20.5	41	93.18%	#DIV/0!	
515447	11	6	0	0	17	43	97.73%	#DIV/0!	
518111	9.5	6.5	0	0	16	44	100.00%	#DIV/0!	

<b>김웅/4월/기초GS/6회/1,2번</b>	<b>채점자</b>
	<b>전호성</b>

안녕하세요. 김웅 변리사님 4월 기초GS 채점자 60기 전호성 입니다.

이번 회차는 비교적 문제 난이도가 평이하여, 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  
 채점을 하며, 1회차 때랑 비교하여 다수의 분들의 답안지가 정말 많이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1.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문 병기에 따라 답안지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조문 병기 꼭 신경 써주세요!
2. 침해 관련 내용 기재 시, 제92조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사안 포섭에 있어, 판례나 요건 키워드로 자세히 해주세요! 아직 대부분의 분들이 앞에서 판례나 요건 등은 잘 쓰셨는데, 앞에서 쓰신 내용에 대해 사안 포섭에서 현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는 바, 시간 분배 연습을 통해 모든 문제를 푸는 연습 필요합니다!
5. 채점하면서 안타까운 점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논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을 답안지에 현출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분명 답안지 내용을 보면 전제가 되는 부분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답안지에 현출” 이 되어야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의 해결이나 사안 등에서 쓰는 내용들에 있어 논거가 되는 내용들은 선결적으로 현출 해주세요!

이제 4월도 끝나가고 5월이 오고 있습니다.

5월, 6월, 7월 기간 동안 체력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 분들이 나태해지고 슬럼프도 오면서 시험 당락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분들은 자만하지 말고 평소처럼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되고,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기회로 삼아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GS 기간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더 많은 부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문제 - 1 >

19.5

I. 설문(1)

1. 예상거절이유 - 신규성 위반 (제33조 제1항 1호)

(1) 신규성 (제33조 제1항 1호)

출원사건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신규한 디자인은 통해 수단등을 이루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2) 요건

특히 의자 디자인 A의 출원일인 2024년 6월 1일 전까지 또는 2024년 10월 1일 현재 한국가정발판현에서 대중에게 공개, 2024년 2월 1일 온라인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 게시. 판매하여 의자 디자인 A는 공지되었다. 공지디자인 A와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였으므로 신규성 위반에 해당한다.

2. 등록방해에 관한 조치.

(1) 신규성상실 제타주장 (제36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전 공개한 경우 알갱이 등을 만족한 경우 신규성, 창작성 판단시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정당한 디자인 권리자 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요건

1) 주체상 요건



공개된 디자인의 정당한 사용에 찬성사 또는 그 등의 인이 해당해야 한다. 공제사와 출원인 공(인)은 또한 되어 있다면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자원이 찬성사 또는 출원인임을 증명하면 된다.

### 2) 객체명 변경

공제사와 출원인(인)이 동일 유사할 필요가 없다. 다만 디자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 3) 시범 변경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되어야 한다.

### (3) 효과

신규성상세예외규정이 인정되는 경우 신규성, 창작성 판단이 용이되지 않은 것은 보고 판단한다. 이는 주장 당사자에게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여전히 공지된 것을 본다.

### (4) 신규성상세예외 규정 적용 거부.

특허 최초 공개일 2023.10.1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24.6.1에 디자인A를 출원하였으며 출원인 사는 ~~출원인~~ 찬성사 이므로 신규성상세예외 규정 적용 가능함.

### (5) 복수의 공제에 대해서

#### ① 제외

복수의 공개가 존재하는 경우 최초 공개디자인에만 신규성예외규정을 하였더라도 최초 공개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후발 공개행위에

비해사도 신규상생설계외의주장 효력이 인정된다.

2. 소주.

특이 2023.10.1의 공개행위(비해사)만 신규상생설계외의주장을 가졌더라도 2024.2.1의 공개행위에 비해사도 동일한 디자인이므로 신규상생설계외의주장의 효력이 바뀐다

3. 사안외 해부.

특이 인정사도 미공개해부 2023.10.1 공개행위에 비해사 공개로 인해 신규상생설계외의주장을 하고 신규상행정이 아님에 등록받은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24.7.1. 공개 이해사도 인정사 포함

4. 결론(2)

1. 신규상행정 여부 판단.

특이 주원인(특이) 2023.12.1에 출원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특이) 2023.12.1에 출원 디자인이므로 신규상행정이 해당한다

2. 2의 공개에 비해사 신규상생설계외의주장 여부.

(1) 주원인 인정.

장점사. 등원인이 해당하든 아니든 2의 공개에 비해사 주장할 수 있다. 자신의 공개 아닌 타인의 공개 관련 공개한 라인이 정당한 장점사도 인정

주원인이 디자인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주장 가능하다.

②) 그이 자체만으로 구성한 경우

그의 디자인의 직접한 구성요소이므로 그의 디자인 A의 공백이 존재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불가하다.

③) 그이 모인하여 공개한 경우.

그이 본인의 디자인을 무관론 공개한 것으로써 특허 개인 창작자. 권리동등인이 아니라면 그의 공백에 존재하는 특허 신규성 상실예외를 주장해 볼 수 있다.

3. 사안별 해명.

①) 그이 자체창작한 경우 신규성 상실예외주장 불가  
해명: 특허 신규성 위반에 의해 특허권을 부여 받는다.

②) 그이 본인의 공백을 보고 모인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예외주장 가능하므로 신규성 부정 주장이 가능하고 특허권은 부여받을 수 있다.

II. 설문(3)

1. 종래 주장.

종래에는 신규성 상실예외주장시 다른 요건을 갖춰야만 주장이 가능한 시를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규정 외의 시에는 주장할 수 없이 당사로서에 불이익 존재하였다.

2. 개정법 - 제36조 2항 삭제

개정법에서는 제36조 2항의 취지를 깨운 시면과 동일 서류 제출 채기 규정을 삭제하면서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심사자는 인정되지 상응상심에의주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보완의 해명.

특히 디자인A 공개 및 판매에 대하여 간략하고 응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인정되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 심판원장에게 디자인A의 공개 및 판매사실에 대한 상응상심에의주장을 할 수 있다.

<문제-2>

14

I. 한개의 발명의 디자인. (제42조)

1. 의미. 취지.

2개의 발명이 한개의 발명으로 동시에 사형되는 경우 2개의 발명이 디자인이 전체로서 동일성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 도 있다. 시스템적인 등 분해하여 전체로서 동일성이 있는 여부를 분해하기 위하여

2. 양자

① 2이상의 발명으로 구성될 것



2015년의 불평으로 구성되어야 하여 동종의 불건이라는  
상관 없다.

2) 동시성 사용가능성의

위치는 무관하며 동시성 사용가능성이 아니라  
한 가지 불평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불평의  
사용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황백 전체로서 동시성

한 가지의 구성요소 불평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동일성이 있는 경우, ~~한 가지~~ 배치된 동시성 시련  
하나의 관점을 표현하듯 같이 한 가지 전체로서  
동일성이 있다.

4) 사행귀착부의 불평사정

사행귀착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한 가지 불평으로서  
불평사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연인 불평

연인이 형성되는 경우 한 가지 불평 개체이므로 2015  
의 불평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1대1인 1층원에  
위반된다 (제40조1항)

3. 소문.

사안에서 부인 여성용 슬랙스이다. 남성용 슬랙스보다  
떨어뜨리기 쉽다 동일한 표현방법 또는 하나의 관점  
을 인식하게 하여 동일성이 인정되고, 커플사제, 예음 등

즉 2015년의 불평  
이여

으로 동시사용성이 인정되므로 한 번의 물품디자인으로  
개별하라

## II 특허출원의 응징가능성

1.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위반 여부 (제46조 1항, 2항)

특의 출원일 24년 (유2인 사건이 20여 사용용 손목  
시계를 공작한 사실이 있고 출원공제된 사정도 유2인  
인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본 사용용 손목시계는 유2인도 이미  
신규성 항변이다.

2.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 (제46조 1항)

(1) 선출원주의 (제46조)

출원일 전 타인이 동일분야 디자인에 대한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응징받을 수 없다. 응징권리를 방위  
하기 위함이다.

(2) ~~출원일 전~~ 상품의 동일. 유사 관계 취외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동일. 유사  
하여야 한다.

(3) 한 번의 물품디자인 판단시. 기면

한 번의 물품디자인 출원권 판단은 한 번 전체를  
기면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소견

선출원은 여사용 손목시계이고 특허 출원은 여사용

상업용 목적사회의 경쟁상호를 하는 한 번의 유통  
 개입이므로 양 디자인의 유통이 서로 비유사하고  
 보통 대상. 병행이 서로 상이하면 선출원주의 위반  
 은 채용되지 않는다.

### 3. 선택된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 (제33조 3항)

1) 이미 출시

출원일전 출원된 타인의 개입출원이 출원일 후  
 공개되고 타인의 선출원 디자인과 일부가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개입하는 등록받을 수 없다.

2) 이후

후출원 개입 출원이 선출원 출원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택된 선출원주의 위반이 아니다.

### 4. 사안의 개입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다면 개입 출원인의  
 공개는 개입이 아닌 것으로 등록 가능하다.

## IV. 출원이 등록된 후.

### 1. 한 번 디자인의 개입권 (제32조)

한 번 디자인은 주정상품 각도에 개입 디자인  
 권이 발생하며 것이므로 한 번 전체로서  
 개입권이 발생한다.

### 2. 제 2 사이 범주까지 - 이용권.

1) 이용안계 (제1항)

1) 디자인등록출원인 지의 출원된 라인의 등록디자인 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느 경우 2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지의 등록디자인을 공표할 수 없다.

2) ~~제1항~~ 지의 출원된 디자인은 지의 X출원 디자인에

비해서 전제에서 비롯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지의 X디자인과 극히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여 그대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이용안계에 해당한다

3. 제1 디자인을 식별한 경우

제1 디자인을 식별한 경우 지의 제1 디자인은 지의 디자인과 X에 대해서 각각권해를 구할 수 있다. 또한 형식상 유사하지만 색상을 통해 구분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4. 지 디자인을 식별한 경우

1) 제1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하더라도 한발 제품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의 색상에 불과하여 제1 디자인에 대한 각각권해를 구할 수 없으며 신출원등록 디자인과 달리 정당 권위로 출제한다

2) 또한 각각권해 심판 불가능해 보인다.

근로 계약서에 관해서 자필로써 서신가능하다

⑦ 이 경우 상사권자로서 상사권을 행사하면 근로 계약서  
라이선스 등 관해서 법의 관행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상사권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Good

가 사서  
주요사항

